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266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266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200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충환

피고, 항소인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2. 6.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200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11. 24. 접수 제231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 6행의 각 "피고 D, E, F"을 각 "제1심 공동피고 D, E, F"으로, 제6행의 "(이하 총칭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를 "(이하 총칭하여 '제1심 공동피고 D 등'이라 한다)"로 각 고치며, 그 이하의 "피고 D 등"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D 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다만 피고들 외에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선준

판사진현민

판사왕정옥

별지